

「교통카드 관련 장비의 전국호환성 인증업무 처리규정」

2020.12.31. 제정

제 1 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교통카드 관련 장비의 전국호환성 인증요령 (국토교통부 2020-238호, 2020.3.2. 이하 ‘요령’ 이라 한다) 제7조에 의거 교통카드 관련 장비의 전국호환성 인증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관련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한국교통카드산업협회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운영체계”란 IC칩에 탑재되어 교통요금 지불·결제 프로그램을 동작하게 하는 환경을 제공하는 운영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2. “인증대행기관”이란 전국호환성 인증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7 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행하는 인증업무를 대행하도록 지정받은 (사)한국교통카드산업협회를 말한다.

3. “인증신청자”란 대중교통운영자, 교통카드사업자(발행사 포함), 교통카드 관련 장비의 개발·제조사 등으로서 인증을 신청하는 자 또는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자를 말한다.
4. “인증인”이란 인증을 취득한 인증신청자를 말한다.
5. “RF(Radio-Frequency)통신 적합성 시험”이란 통신 거리, 충돌 방지 등 RF통신 관련 인증기준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는 시험을 말한다.
6. “프로토콜 적합성 시험”이란 Application 정보조회 프로토콜, 거래 프로토콜, 재거래 프로토콜, 직전거래취소 프로토콜 등 프로토콜 관련 인증기준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는 시험을 말한다.
7. “시료”란 인증을 받기 위하여 제출된 시험용 장비를 말한다.
8. “인증제품”이란 인증 받은 장비를 말한다.
9. “인증대상 장비”란 교통카드 관련 장비의 전국호환성 확보를 위하여 인증을 받아야 하는 장비이다. 이 규정에서는 교통카드, 지불SAM을 말한다.
10. “인증번호”란 인증대행기관이 인증서 교부 시 장비에 부여된 고유번호를 말한다.
11. “재시험”이란 인증신청자가 인증에 불합격한 후 해당 인증 취득을 위해 재신청하여 시험하는 경우를 말한다.
12. “재인증”이란 인증인이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을 원할 경우에 연장 신청하여 인증 시험결과 합격하여 유효기간을 연장해 주는 것을 말한다.

제 2 장 인증절차 및 방법

제4조 (인증절차) ①인증대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인증업

무를 수행하며, 세부 인증절차는 [별표 1]의 인증 절차도에 따른다.

1. 인증 신청의 접수
2. 적합성시험 및 시험결과의 판정
3. 인증 결과의 통보
4. 인증서 교부

②인증대행기관은 인증시험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인증시험(이하 ‘인증시험기간’이라 한다)을 완료한다. 다만 천재지변, 인증대행기관의 불가피한 사정 등이 발생하여 30일 이내 인증시험의 완료가 불가능할 경우에 인증대행기관과 인증신청자가 상호 협의하여 인증시험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 (신청) ①인증신청자는 인증 신청서 (요령 [별지 제3호 서식]) 및 그에 따른 구비서류 등을 첨부하여 인증대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 인증신청자는 인증대상 장비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신청할 수 있다.

②인증신청자는 법인등기부 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사용인감계 (사용인감 사용 시)를 인증대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인증신청자는 인증대상 장비가 관련법령에 따라 방송통신기기인증서 등 별도의 인증서 및 시험성적서가 요구될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인증대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인증대행기관은 교통카드 전국호환에 필요한 제품 및 문건을 인증신청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인증신청자는 요청 기간 내 해당 제품 및 문건을 인증대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인증신청자는 인증 신청 이후 신청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인증대행기관이 인증신청자에게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한 사항은 제8조의 규정에 따른다.

⑥인증대행기관은 접수된 서류 및 시료를 인증신청자에게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모바일형 교통카드에 한하여 인증결과에 따라 시료 보관 대수가 변경될 수 있다.

제6조 (적합성 시험) ①RF통신 적합성은 “RF통신 적합성 시험 규정”에 의한다.

②프로토콜 적합성은 “프로토콜 적합성 시험 규정”에 의한다.

③인증대행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적합성 시험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자의 인력·장비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제7조 (시료수량) ①인증신청자가 교통카드 및 지불SAM 인증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시료의 수량은 각 5대로 한다.

②인증신청자는 교통카드 및 지불SAM 시료에 식별이 용이하도록 번호를 부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인증대행기관은 시료의 품질유지를 위하여 인증신청자에게 시료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으며, 시험방법의 조정 등에 따라 시료의 수량을 변경할 수 있다.

④인증신청자는 모바일형 교통카드의 시료제출 시 RF통신기능을 가진 모바일장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⑤인증신청자는 모바일형 교통카드의 시료제출 시 각 모바일장치의 제조사 또는 모델을 모두 다르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보완사항) ①인증대행기관은 시험기간 중에 수정 또는 보완 조치하여야 할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인증신청자에게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인증신청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의 수정·보완 기회는 1회에 한하며 수정·보완 후에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한다.

②제1항에 의한 수정·보완에 따른 기간은 인증시험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③인증대행기관은 인증신청자가 제1항에 의한 수정·보완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수정·보완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불합격 처리 후 인증시험을 종결한다. 이 경우에 제17조에 따라 납부한 수수료는 환불하지 않는다.

제9조 (재시험) ①인증대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재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1. 인증신청자의 인증 중지요청 등으로 인증이 중단되어 불합격 처리된 후 재시험을 신청하는 경우
2. 인증신청자가 인증에 불합격한 후 불합격 사유를 해결하고 재시험을 신청하는 경우
3. 인증에 불합격한 인증신청자의 이의 신청으로 재시험을 결정하는 경우

②인증대행기관은 제1항에 따른 재시험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재시험 절차는 제4조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다만,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인증신청자는 재시험 신청에 따른 수수료를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 3 장 인증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제10조 (시험결과의 표기) 인증대행기관은 시험결과의 표기를 아래의 범위로 한다.

시험항목	공개내용	비고
RF통신 적합성 시험	합격/불합격	
프로토콜 적합성 시험	합격/불합격	

제11조 (인증결과 통보) ①인증대행기관은 인증대상 장비가 인증시험에 합격하면 시험완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에 인증 결과를 보고한다.

②인증대행기관은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인증서를 발행하면 이를 인증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증서 발행 및 교부가 지연되는 경우 인증대행기관은 인증신청자에게 지연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인증대행기관은 인증대상 장비가 인증시험에 불합격할 경우에 시험완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인증결과를 서면으로 인증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인증신청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생략할 수 있다.

제12조 (인증표시) ①인증신청자는 인증에 합격된 인증대상 장비에 대하여 전국호환성 장비임을 나타내는 [별표 2]의 표시(이하 ‘인증표시’라 한다)를 부착할 수 있다.

②인증신청자는 인증표시를 부착하는 경우 인증표시를 사용자가 식별하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13조 (이의 신청) ①인증결과에 이의가 있는 인증신청자 또는 제16조에 따른 제재조치를 받은 인증신청자는 해당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인증대행기관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인증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1. 인증신청자는 이의를 제기하고자 할 경우에 전국호환성 인증 이

의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인증대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인증대행기관은 인증신청자의 전국호환성 인증 이의신청서가 접수되면 수용여부에 대한 검토 결과를 인증신청자에게 통보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을 수용하기로 검토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라 처리한다.

③제재조치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1. 인증신청자는 이의를 제기하고자 할 경우에 제재조치 이의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인증대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인증대행기관은 인증신청자로부터 제재조치에 대한 이의신청서가 접수되면 수용여부에 대한 검토 결과를 인증신청자에게 통보하고, 이의신청을 수용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요령 제11조에 따른 인증업무자문위원회에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제 4 장 인증사후관리, 취소 및 보고

제14조 (인증관리) ①인증인은 유효기간 만료 시 인증서를 인증대행기관에 즉시 반납하여야 하며 인증에 관련된 용어 및 명칭 등의 사용 등을 중지하여야 한다.

②인증인이 유효기간의 연장을 원할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60일 이전에 재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신청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신규로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인증인은 재인증에 따른 인증서 교부 시 기존 인증서를 인증대행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④인증대행기관은 인증 관련 서류를 5년간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⑤교부된 인증서는 재발행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분실·훼손

손, 영문 인증서 등의 재교부가 필요한 경우 인증인은 서면으로 인증대행기관에 재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 (사후관리) ①인증대행기관은 인증제품의 품질유지 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해 인증제품을 수시로 검사할 수 있고, 이 경우 인증인은 인증대행기관의 검사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②인증대행기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결함 등이 발견되어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 인증인에게 이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인은 개선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16조 (제재조치) ①인증대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국토교통부에 인증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1. 인증인이 제15조에 따른 개선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2. 요령 제17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②인증인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인증서를 인증대행기관에 즉시 반납하여야 하며 인증에 관련된 용어 및 명칭 등의 사용 등을 중지하여야 한다.

제 5 장 인증수수료

제17조 (수수료) ①인증신청자는 제5조, 제9조제1호 및 제2호, 제14조에 따른 인증 신청 시 인증대행기관에 [별표 3]에 따른 인증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인증신청자는 제1항에 의한 인증수수료 납부 증명서를 첨부하여 인증 신청서를 인증대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 (수수료 환불) 인증대행기관은 인증 신청 건에 대해 적합성 시험에 착수하였을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수수료를 환불하지 않는다.

제 6 장 관 리 및 감 독

제19조 (시험실 관리) ①인증대행기관은 시험실에 대해 다음 각 호에 서 정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시건장치 등을 포함한 통제 방안
2. 시험자료(시험결과 출력물, CD-ROM 등), 시험시료, 시험프로그램(소스 포함), 기타 보관 설비 구축 방안

②인증대행기관장은 시험실에 관계자 외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제20조 (시험장비 관리) ①인증대행기관은 시험장비 관리대장을 비치 하여 매월 말 기준 책임자 지휘아래 확인·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인증대행기관장은 제1항에 의거하여 확인·점검 결과, 시험장비에 이상이 발생한 경우 신속히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1조 (인증내역 관리) 인증대행기관은 인증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22조 (비밀보호 의무) 인증업무 종사자는 인증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 (공정 의무) ①인증업무 종사자는 인증신청자·인증인 및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 향응 등을 제공받아서서는 아니 된다.

②인증대행기관장은 인증업무 종사자가 제 규정을 준수하여 공정하게 인증업무를 처리하는 지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③인증업무 종사자가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인증대행기관장은 해당자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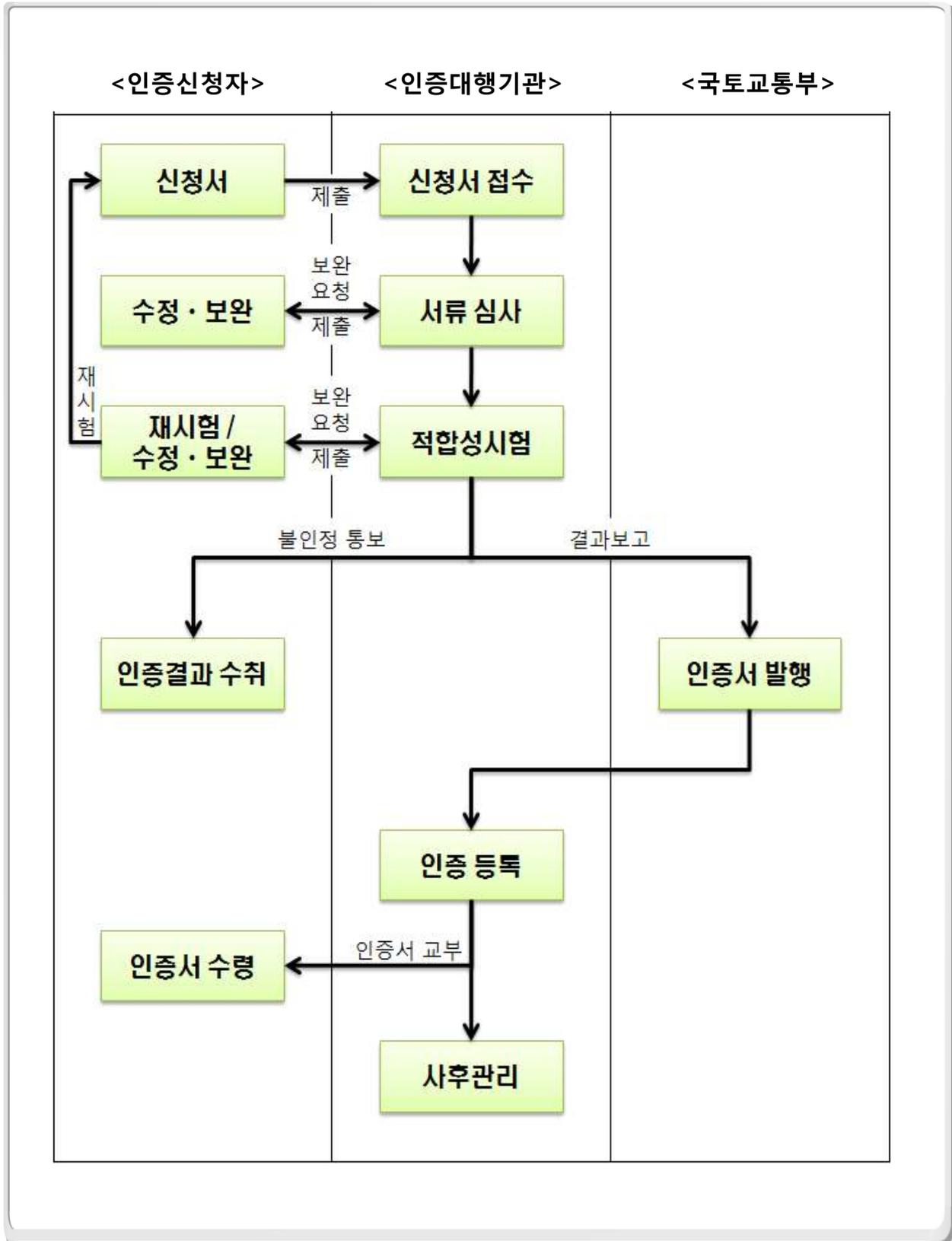
제 7 장 기타

제24조 (인증대행기관 지정의 취소에 따른 업무이관) 인증대행기관 지정의 취소에 따른 업무이관의 범위는 보관중인 인증 관련 일체의 자료를 대상으로 하며, 인증대행기관은 해당 자료를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하는 기관에 이관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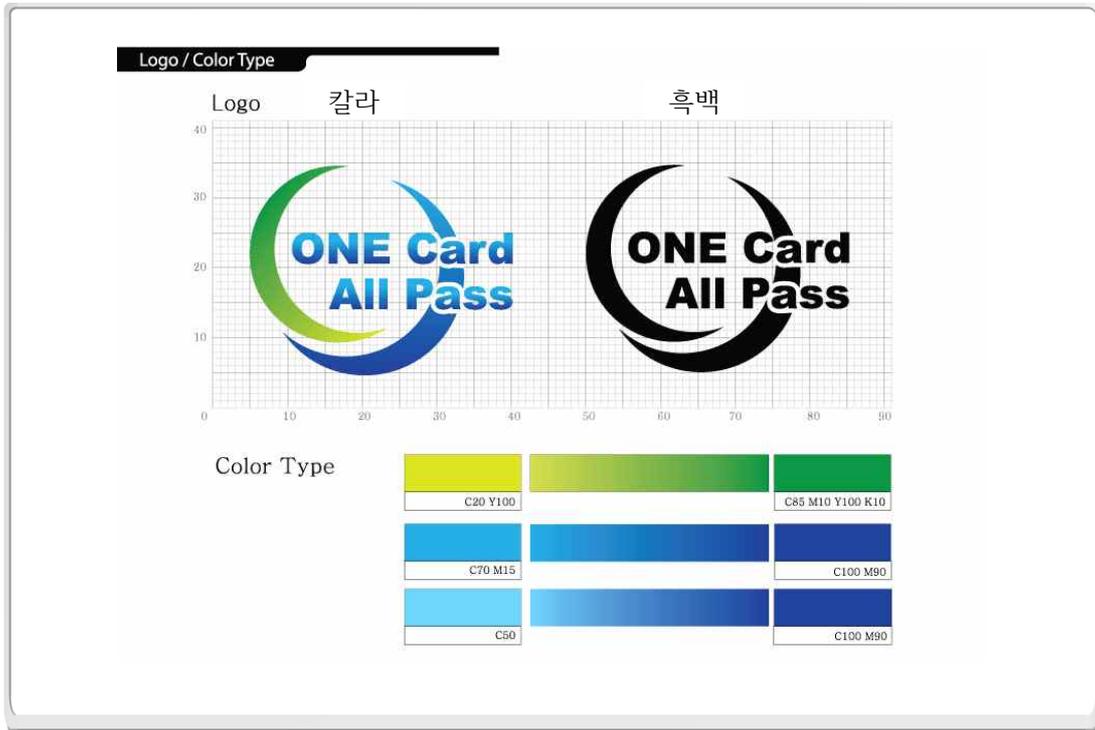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인증 절차도



[별표 2] 인증표시



[별표 3] 인증 수수료

< 인증 수수료 >

구 분	금액 (부가세 없음)
선불 교통카드 (일반형)	825만원
선불 교통카드 (모바일형)	825만원
후불 교통카드	825만원
지불 SAM	1,230만원

※ 다만, 한국교통카드산업협회 회원사의 경우 20% 할인
 · 825만원 → 660만원, 1,230만원 → 984만원

